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729
------	------

2025. 6. 27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이종환 의원 외 20명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】

-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6.16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. 또한, 성폭력의 피해는 선수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

발을 방해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.

- 이를 위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협력과 공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명확한 정책 수립,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‘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’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(안 제4조제7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민적인 우려를 낳았던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따라 ‘스포츠윤리센터’ 등이 설립되는 등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었음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사후적 징계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체육진흥기금 운용 현황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적립한 후, 573억원이 조성된 2011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음.
-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42억 9천만원이며, 이는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60%인 73억 8천8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69억 2백만원을 포함한 것임.

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4,290	
이자수입	2,337	공공예금, 예탁금 이자
전입금	7,388	일반회계 출연금
예치금 회수	4,565	전년도 예치금

< 지출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4,290	
비용자성 사업비	12,183	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 14개 사업
기본경비	10	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
여유자금 예치금	2,097	여유자금 공공예금 예치

- 2025년도 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‘야구장(잠실야구장, 고척스카이돔) 시설 개보수’와 ‘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’ 및 ‘학교운동부 육성 지원’ 등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있지만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폭력을 예방하려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 및 조례 개정 필요성

- 2018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‘미투(나도 말한다) 운동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, 특히 체육계 쇼트트랙 종목

선수들의 성폭력 실태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기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.

- 또한 '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'에 따르면,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폭력, 성비위, 인권침해 등의 비위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것은 140건(40.2%)이 있다고 밝혀졌음.
-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만의 원인이 아닌 청소년 단계부터 선수를 지도하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, 외부로부터 차단된 폐쇄적 합숙소 및 훈련장소, 사건 발생 후 묵인, 방조, 공조하는 체육계 내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성폭력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정부 또한 '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'에서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인권 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,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시사하였음.

< 체육계 성폭력 예방 관련 주요 내용 >

- 체육계 성숙한 문화로 지켜나가는 '스포츠 인권'
- (스포츠 인권교육 강화) (성)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사전 이수제 도입 검토(국체법 규칙 개정), 체육계 '인권교육 거버넌스*' 운영
- * 윤리센터- (지방)체육회- 대학·프로스포츠협회 협업→윤리센터, 교육콘텐츠·강사 제공

-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따른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계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,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성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.

라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(안 제4조제7호)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</u> <u>8. (현행과 같음)</u>

- 동 개정안은 스포츠의 원래 가치를 지키고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.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사업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고하여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
- 또한 관련 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선수

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는것은 가능하다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춘선, 오금란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임춘대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. 또한, 성폭력의 피해는 선수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방해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.
이를 위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협력과 공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명확한 정책 수립,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'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'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(안 제4조제7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현행 제4조제7호를 같은 조제8호로 한다.

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</u>
<u>7. (생략)</u>	<u>8. (현행과 같음)</u>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제7호가 향후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사업의 재원마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해당 규정에 의해 직·간접적인 비용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확인결과 이는 예산을 통해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¹⁾이므로 서울시 전체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관광체육국 2025 <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> : 24,103,691천원

-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문의결과 서울시는 현재 해당 예산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해당 시보조금을 재원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추진(연간 91,800천원 소요)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- 또한 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내용 중 성희롱·성폭력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(※ 「2025년 서울특별시체육회」 스포츠 인권 향상 운영 계획(안)(서울시체육회, 2025. 1.))
- ⇒ 그러므로 현재 시 예산을 통해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해당규정에 의해 예산에서 기금으로 재원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, 서울시 재정지출 총액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